

2005. 5. 25. 10 : 00
제119회 임시회 산건위 제1차회의

조 레 안 검 토 보 고

- ①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- ②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□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5. 5. 1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5. 5. 19.
- 라. 의안번호 : 제2005 - 24호

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정이유

- 연차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체를 선정·지원함으로써, 우리군 관내 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과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 하기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함 (안 제2조).
- 기금 조성은 출연금, 운용 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함 (안 제3조)
- 기금을 사용할수 있는 용도를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차익보 전과 기금운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정함 (안 제4조)
- 기금은 군수가 운용·관리하되,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 공무원을 둠 (안 제5조)

- 자금의 용자 용도를 경영안전자금, 기술개발자금, 시설 현대화 자금등으로 정함 (안 제10조).
- 기금 취급금융기관을 선정하여,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용자금을 대출 할수 있도록 함 (안 제12조).
- 용자금의 용자 기간은 4년이내, 업체당 용자한도액은 총액 3억원의 범위 안으로 정함 (안 제13조).
- 용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하며, 연리4% 범위 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 할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(안 제14조).

3. 검토의견

-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관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·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기존업체의 부실 예방은 물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의 육성과, 경상남도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불가한 채석업체 및 소규모 공예업체에 지원도 가능할 뿐 아니라,
- 자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등 중소기업체의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됨.
-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자금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군

에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,

- 융자금의 회수 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두고, 융자금을 목적이외 사용 및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으로써 조성된 융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
- 융자금 지원 용도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경영안정자금 등 3개 항목 외에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칙 제정 시 폭을 넓혀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,
- 조성된 기금의 사용 용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예금 이자로 이자 차액보전 재원만으로 사용하므로 기금의 관리는 용이하나 저금리 시대로 인해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,
-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,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'투자유치심의위원회' 등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있는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,

- 또, 용자조건으로 기간은 4년 이내, 한도액은 총액 3억 원의 범위 안으로 정한 이유와 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하고, 연리 4% 범위 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함.
- 또한, 경남에서도 15개 시·군이 '중소기업육성기금'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도, 우리 군은 이제야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함.
- 기타 동 조례의 형식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참고자료

-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3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
- 「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
- 「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계획」

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5. 5. 1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5. 5. 19.
- 라. 의안번호 : 제2005 - 25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2004. 12. 31.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2005. 03. 08.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지원 근거 범위를 일치시키고,
- 부지 매입비에 대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용자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며,
- 투자유치 대상 업종 및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물류, R&D, 관광, SOC 등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용어의 정의에서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을

「외국 투자촉진법」과 일치시키고,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조례로의 변경 및 물류시설등을 신설함. (안 제2조).

- 공장부지 매입비를 투자유치진흥기금 으로 용자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(안 제6조 제2항).
-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·물류· R&D· 관광· SOC등 까지 확대하고,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신설함 (안 제8조).
-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된 각종 보조금의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12조의2).
-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신청 시기 및 기한을 산업자원부의 국가재정지원기준과 일치되도록 하고,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신설 함 (안 제13조 및 제14조).
-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정한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함 (안 제22조의2 신설).
- 투자유치 성공 보상 범위에 공무원 인사우대를 추가 함 (안 제24조).

3. 검토의견

- 규칙에서 '용어 정의'로 규정 되어진 것은 조례체계상 잘못된 것으로

로 개정안에서 바로잡은 것이며, 공장부지 매입비를 투자유치 진흥 기금으로 용자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,

-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를 제조업 위주에서 물류·R&D·관광·SOC·연구시설등에 까지 확대하여 신설함으로 다양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 촉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공장의 신축자금 등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조례에 규정된 각종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없도록 함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조치이며,
-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 수도권 기업유치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개정으로 사료되었음.

○ 기타 동 조례의 형식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참고자료

-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(2004. 12. 31. 개정),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

령」(2005. 03. 08. 개정).

- 「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(2004. 9. 30. 개정)